

서울특별시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등 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 번호	2123
----------	------

2021년 3월 5일
행정자치위원회

1. 심사경과

- 가. 제출자 : 장인홍 의원(찬성자 42명)
- 나. 제출일 : 2021년 2월 2일
- 다. 회부일 : 2021년 2월 9일
- 라. 상정일 : 제299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
2021년 2월 26일 상정·의결(원안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장인홍 의원)

가. 제안이유

- 서울특별시는 동 조례를 통해 예산절감 사례 등을 공개대상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에 비공개 사유도 함께 명시하여 조례의 명확성과 실질적 규범력을 높이고 정보공개 방법의 근거도 명시함으로써 조례의 내실화를 갖추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서울시가 예산절감 사례 등을 공개대상으로 하고 있는바, 정보비공개 사유에 관해서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자 함(안 제2조).
- 서울시의 예산절감 관련 정보공개 방법에 관해 그 근거를 명시하고자 함(안 제3조).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서울특별시 열린시정을 위한 행정정보공개 조례」
-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 미첨부사유서 별첨
- 다. 입법예고(2021. 2. 16. ~ 2. 23.) 결과 : 의견 없음.

4.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수석전문위원 한태식)

- 본 개정조례안은 공개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예산절감 사례 등’에 추가적으로 정보 비공개대상 사유와 서울시의 예산절감 관련 정보공개방법의 근거 법령(「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서울특별시 열린시정을 위한 행정정보공개 조례」)을 명시하려는 것임(안 제2조 및 안 제3조).
- 서울시는 「지방재정법」 제48조에 근거하여 2001년부터 시민이 예산절감 및 수입증대에 기여한 경우 성과금 등을 지급하는 예산성과금 제도를 도입하였고, 2013년에는 동 법 제48조의2에 따라 예산낭비신고센터를 구축하여 시민들에게 예산낭비신고·절감에 대한 제안을 받고 있음.

「지방재정법」

제48조(예산 절약에 따른 성과금의 지급 등)

-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의 집행 방법이나 제도의 개선 등으로 예산이 절약되거나 수입이 늘어난 경우에는 절약한 예산 또는 늘어난 수입의 일부에 기여한 자에게 성과금으로 지급하거나 다른 사업에 사용할 수 있다.
-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성과금을 지급하거나 다른 사업에 사용하려면 예산성과금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 ③ 제1항에 따른 성과금의 지급과 다른 사업에의 사용, 제2항에 따른 예산 성과금 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8조의2(예산·기금의 불법지출·낭비에 대한 주민감시)

- ①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또는 기금을 집행하는 자, 재정지원을 받는 자,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기금관리주체(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기금을 관리·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국가재정법」 제8조에 따른 기금관리주체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와 계약 또는 그 밖의 거래를 하는 자가 법령을 위반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에 손해를 가하였음이 명백한 때에는 누구든지 집행에 책임이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기금관리주체에게 불법지출에 대한 증거를 제출하고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시정요구 또는 제안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기금관리주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처리결과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고 시정요구 또는 제안을 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기금관리주체는 제1항의 시정요구에 대한 처리결과에 따라 수입이 증대되거나 지출이 절약된 때에는 시정요구를 한 자에게 제48조에 따른 성과금을 지급할 수 있다.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신고센터 개요〉

추진근거

- 지방재정법 제48조의2(예산·기금의 불법지출·낭비에 대한 주민감시)
- 서울특별시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등 공개에 관한 조례 제4조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신고센터 설치)

추진경과

- 2007. 2. : 예산절감 시민참여방 개설
- 2012. 2. : 시민참여방 폐지(국민신문고와 통합 운영)
- 2013. 5.13. : 서울시 예산낭비신고센터 신규 구축 및 운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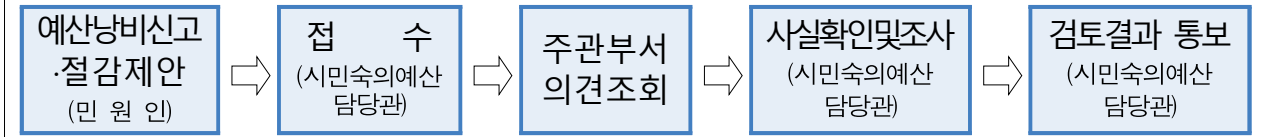
예산낭비신고센터 운영개요

- 운영기간 : 연 중
- 운영내용 : 예산낭비신고·절감제안 및 답변처리(접수 30일 이내) 등

※ 우수제안 등은 예산성과금 심사위원회 심사를 통해 성과금, 사례금 등 지급(연1회)

- 운영방법 : 온·오프라인 운영
 - (인터넷 접수) 예산낭비신고센터 홈페이지(시민참여예산홈페이지), 국민신문고
 - ▶ 예산낭비신고센터 홈페이지: 예산낭비신고·예산절감제안 접수, 제도 소개, 사례 안내 등
 - (방문 접수) 시민숙의예산담당관, 본청 1층 열린민원실

○ 처리절차



- 현행 조례 제2조제1항에서는 예산절감 사례와 시민의 예산낭비신고 및 시정요구·감사요구, 조치결과에 관한 사례 등 공개대상에 대해 명확히 규정하고 있는데 반해, 비공개대상의 사유에 대해서는 제2항에서 ‘조사 및 재판이 진행중인 때’로만 규정하고 있음.

「서울특별시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등 공개에 관한 조례」
제2조(공개대상)

- ① 이 조례에 따른 공개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예산절감 사례
 2. 시민의 예산낭비신고 및 시정요구·감사요구와 그 조치결과에 관한 사례
 3. 시민의 예산절감 및 수입증대와 관련된 제안 사례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② 제1항의 공개대상은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조사 및 재판이 진행중인 때에는 공개대상에서 제외한다.

- 이와 같은 서울시의 정보공개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그 근거를 두고 있는바, 동 법 제6조제1항에서는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는 국민의 권리가 존중될 수 있도록 이 법을 운영하고 소관 관계 법령을 정비하며, 정보를 투명하고 적극적으로 공개하는 조직문화 형성에 노력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6조(공공기관의 의무)

- ① 공공기관은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는 국민의 권리가 존중될 수 있도록 이 법을 운영하고 소관 관계 법령을 정비하며, 정보를 투명하고 적극적으로 공개하는 조직문화 형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 또한, 동 법 제9조에서는 비공개 대상 정보의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는바, 개정조례안 제2조제2항은 공개대상에서 제외되는 구체적인 항목들에 대해 제1호부터 제8호까지 신설하여 조례의 명확성과 내실화 및 실질적 규범력을 높일 필요가 있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고 하겠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비공개 대상 정보)

- ①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공개 대상이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대통령령 및 조례로 한정한다)에 따라 비밀이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2.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3.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4.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矯正),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5.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이나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다만,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을 이유로 비공개할 경우에는 의사결정 과정 및 내부검토 과정이 종료되면 제10조에 따른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6.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 각 목에 열거한 사항은 제외한다.
- 가.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
 - 나. 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아니하는 정보
 - 다.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이나 개인의 권리 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 라.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직위
 - 마.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직업
7.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등”이라 한다)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 각 목에 열거한 정보는 제외한다.
- 가. 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危害)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 나. 위법·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8.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 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② 공공기관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가 기간의 경과 등으로 인하여 비공개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에는 그 정보를 공개 대상으로 하여야 한다.

- 행정안전부에서도 2020년 12월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국정 투명성 강화를 위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기관별로 비공개 대상정보 범위에 관한 세부기준을 3년마다 점검·개선하고 이를 정보공개시스템을 통해 개선하도록’하는 등 점차 비공개 정보 사유에 대해 세부적으로 규정되는 추세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비공개 대상 정보)

③ 공공기관은 제1항 각 호의 범위에서 해당 공공기관의 업무 성격을 고려하여 비공개 대상 정보의 범위에 관한 세부 기준(이하 “비공개 세부 기준”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이를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2. 22.〉

④ 공공기관(국회·법원·헌법재판소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외한다)은 제3항에 따라 수립된 비공개 세부 기준이 제1항 각 호의 비공개 요건에 부합하는지 3년마다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 비공개 세부 기준을 개선하여 그 점검 및 개선 결과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0. 12. 22.〉

- 또한, 동 조례는 「서울특별시 열린시정을 위한 행정정보 공개 조례」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바에 따라 시민에게 정보를 공개하고 있는바, 이러한 근거법령을 조례에 명시하는 것은 의미가 있다고 하겠음.

「서울특별시 열린시정을 위한 행정정보 공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서울특별시 정보공개 대상기관의 행정정보를 공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행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시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여 소통과 협력을 통한 열린 시정을 구현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 한편, 안 제3조제2항과 제3항은 공개대상 사례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홈페이지에 공개된 사례를 현행과 같이 취합하여 사례집을 발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서울특별시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등 공개에 관한 조례」

제3조(공개방법)

- ① 시장은 제2조제1항에서 정한 공개대상 사례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서울특별시 열린시정을 위한 행정정보공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 ② 시장은 제2조제1항에서 정한 공개대상 사례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 ③ 제2항에 따라 공개된 사례를 취합하여 사례집을 발간할 수 있다.

- 서울시가 시민참여예산을 도입한지 10주년이 되는 등 시민의 시정참여도는 날로 높아지는 반면,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에 대한 신고 및 제안 건수는 최근 5년간(2015년~2019년) 평균 142건에 불과하므로 동 조례 제3조에서의 홈페이지를 통한 정보공개나 사례집 발간에서 더 나아가 효율적으로 시민의 참여를 활성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며, 집행부는 적극적인 홍보 등을 통해 예산절감과 예산낭비 사례 발굴 등이 좀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요망된다고 하겠음.

〈최근 5년간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신고센터 운영현황〉

【 연도별 신고센터 운영현황 】

(단위 : 건)

구 분	2020년	2019년	2018년	2017년	2016년	2015년
계	80	148	127	180	121	133
예산낭비신고	64(처리중1)	134	116	156	106	113
예산절감제안	16	14	11	24	15	20

5.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6. 토론요지 : 없음.

7. 심사결과 : 원안 가결(재석위원 8명, 전원찬성).

8.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서울특별시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등 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장인홍 의원 대표 발의)

의안 번호	2123
----------	------

발 의 년 월 일 : 2021년 02월 02일

발 의 자 : 장인홍 의원(1명)

찬 성 자 : 강대호, 권영희, 김경우, 김기대, 김기덕, 김생환, 김수규, 김용석, 김인호, 김재형, 김정태, 김종무, 김춘례, 김평남, 김혜련, 노승재, 문장길, 박기열, 박기재, 박상구, 성흠제, 송아량, 송재혁, 송정빈, 신정호, 양민규, 유 용, 이경선, 이광호, 이상훈, 이영실, 이정인, 이호대, 임종국, 장상기, 전병주, 정진술, 정진철, 최 선, 최정순, 황규복, 황인구 의원(42명)

1. 제안이유

- 서울특별시는 동 조례를 통해 예산절감 사례 등을 공개대상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에 비공개 사유도 함께 명시하여 조례의 명확성과 실질적 규범력을 높이고 정보공개 방법의 근거도 명시함으로써 조례의 내실화를 갖추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서울시가 예산절감 사례 등을 공개대상으로 하고 있는바, 정보비공개 사유에 관해서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자 함(안 제2조).

나. 서울시의 예산절감 관련 정보공개 방법에 관해 그 근거를 명시하고자 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서울특별시 열린시정을 위한 행정정보공개 조례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비용추계 비대상사유서 별첨)

다. 기타 : 신·구조문 대비표

서울특별시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등 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등 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조사 및 재판이 진행중인 때에는 공개대상에서 제외한다.”를 “다음 각 호의 경우인 때에는 공개대상에서 제외한다.”로 하고, 제1호부터 제8호까지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대통령령 및 조례로 한정한다)에 따라 비밀이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2.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3.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4.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矯正),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5.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이나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6.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

으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 각 목에 열거한 개인에 관한 정보는 제외한다.

가.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

나. 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아니하는 정보

다.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이나 개인의 권리 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라.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직위

마.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직업

7.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등"이라 한다)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 각 목에 열거한 정보는 제외한다.

가. 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危害)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나. 위법·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8.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 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제2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가 기간의 경과 등으로 인하여 비공개성의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에는 그 정보를 공개 대상으로 하여야 한다.

제3조제1항 중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서울특별시 열린시정을 위한 행정정보공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로 한다.

제3조제2항과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 ② 시장은 제2조제1항에서 정한 공개대상 사례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 ③ 제2항에 따라 공개된 사례를 취합하여 사례집을 발간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공개대상) ① 이 조례에 따른 공개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예산절감 사례 2. 시민의 예산낭비신고 및 시정요구·감사요구와 그 조치결과에 관한 사례 3. 시민의 예산절감 및 수입증대와 관련된 제안 사례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p>② 제1항의 공개대상은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u>조사 및 재판이 진행중인 때에는</u> 공개대상에서 제외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 신 설 ></p> <p style="text-align: center;">< 신 설 ></p> <p style="text-align: center;">< 신 설 ></p>	<p>제2조(공개대상) ① (현행과 같음)</p> <p>② 제1항의 공개대상은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u>다음 각 호의 경우인 때에는</u> 공개대상에서 제외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u>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대통령령 및 조례로 한정한다)에 따라 비밀이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u> 2. <u>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u> 3. <u>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u>

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신 설 >

4.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矯正),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 신 설 >

5.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이나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 신 설 >

6.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 각 목에 열거한 개인에 관한 정보는 제외한다.

< 신 설 >

가.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

< 신 설 >

나. 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아니하는 정보

- < 신 설 > 다.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이나 개인의 권리 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 < 신 설 > 라.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직위
- < 신 설 > 마.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직업
- < 신 설 > 7.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등"이라 한다)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 각 목에 열거한 정보는 제외한다.
- < 신 설 > 가. 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危害)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 < 신 설 > 나. 위법·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 < 신 설 > 8.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 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 신 설 > ③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제3조(공개방법) ① 시장은 제2조제1항에서 정한 공개대상 사례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개된 사례를 취합하여 사례집을 발간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공개 시 공개대상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주민등록번호·직위 및 주소 등 특정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는 삭제하여야 한다.

해당하는 정보가 기간의 경과 등으로 인하여 비공개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에는 그 정보를 공개 대상으로 하여야 한다.

제3조(공개방법) ① 시장은 제2조제1항에서 정한 공개대상 사례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서울특별시 열린시정을 위한 행정정보공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2조제1항에서 정한 공개대상 사례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공개된 사례를 취합하여 사례집을 발간할 수 있다.